

강원도의회 제304회 임시회 의원 입법 동향

- ◆ 강원도의회 제304회 임시회(10.5.~10.15.)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s://council.gangwon.kr/minutes/bill/search/accept.do>

제304회 임시회 조례안 처리 목록

◆ 총 건 : 의원발의 9건

상임위원회	조례안명	발의자	본회의 처리결과 (2021. 10. 15.)
기획행정위원회 (3)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규호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정유선 의원	수정가결
사회문화위원회 (2)	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권순성 의원	수정가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석 의원	원안가결
농림수산위원회 (2)	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병구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호진 의원	수정가결
경제건설위원회 (1)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용 의원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1)	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정유선 의원	원안가결

《 참고 : 조례 제정절차 등 》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304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1. 10. 15.(금)
-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안 공포)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요구 조례안 확정)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조례 효력발생) :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단,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0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 공동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나일주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정선2), 박병구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1), 박윤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3), 윤석훈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1), 조형연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인제)

강원도의회가 민간위탁의 변경된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민간위탁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리하고자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회가 동의한 민간위탁에 대해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소재지·규모·지원시설 등 및 민간위탁기간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성호 의원



권순성 의원



나일주 의원



박병구 의원



박윤미 의원



윤석훈 의원



조형연 의원

▣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김규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양구)
- 공동발의 : 김형원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동해2), 박윤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3), 원태경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3),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이 조례에 따른 문해교육의 대상은 비문해자와 결혼·이주 등으로 강원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다.
- ② 도지사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강원도문해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교육청,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문해교육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김규호 의원



김형원 의원



박윤미 의원



원태경 의원



허민영 의원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 대표발의 :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공동발의 : 김규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양구), 김준섭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속초2), 박병구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1), 박윤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3), 박인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2),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 발의됐다.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 · 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 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성인지예산위원회를 둔다. ④ 도민은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그 의견을 수렴하고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유선 의원



김규호 의원



김준섭 의원



박병구 의원



박윤미 의원



박인균 의원



허소영 의원

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 공동발의 :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1),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2),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최종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도민의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자 「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걷기 활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앱 개발 · 운영, 걷기 활동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및 교육 · 홍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걷기 활동의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 사업에 기여도가 높은 관계 기관, 단체 및 도민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권순성 의원



김경식 의원



신명순 의원



심영미 의원



정유선 의원



최종희 의원



허민영 의원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김진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원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가 남북 평화증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다.

■ 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박병구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1)

■ 공동발의 : 신도현 의원(부의장 · 국민의힘 · 홍천2), 심영섭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함중국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횡성2)

사회적 약자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하고 농촌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농업 활동을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고용,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농업을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사회적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사회적농업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및 사회적농업 육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사회적농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농장이나 사회적농업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사회적농업 확산과 사회적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양성,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사회적농장에 대한 경영·기술·세무·노무·법률·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 제공, 사회적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박병구 의원



신도현 의원



심영섭 의원



함중국 의원

■ 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위호진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4)

■ 공동발의 :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양양), 박상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삼척2),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2)

도내 축산업 종사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에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심리지원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치료 대책 마련을 위하여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호진 의원



김정중 의원



박상수 의원



신명순 의원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김상용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삼척1)



코로나로 인한 저성장 경제와 경기침체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벤처·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대상을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고용창출유지 자금 융자지원 인센티브사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조성을 위한 도 출연기관 출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회피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강원도 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유형, 대처방안, 보호기관 및 복지서비스 등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대 유형, 신고 방법, 피해학생 보호·지원 체계 등 관련 자료를 누리집, 가정통신문,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